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667호 |
| 의결 연월일 | 2024. . . (제 회) |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| 박지현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4년 8월 23일 |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67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년 8월 23일

발의자 : 박지현, 이상식, 김종필,
김현문, 이동우, 이상정,
황영호

1. 제안이유

-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,
- 인용된 법령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“사용료”를 “대관료”와 “이용료”로 구분해 명시함. (안 제4조)
-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보조를 위한 동반 보호자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의2)
- 이용료 및 감면 내용에 관한 [별표2]를 신설함.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비용추계 : 붙임
-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
-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이용대상 및 사용료)”를“(이용대상 및 대관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”을 “대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”를 “대관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관료와 이용료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사용료의 감면)”을“(대관료의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”를 “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이용료의 감면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(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제1

호에 따른 의사자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
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 9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함께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.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
 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
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

제6조제2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, 별표 1(중전의 별표)의 제목 중 “사용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”을 “대관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(중전의 별표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기 준 | 평일 대관료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|
| 강 당 | 주간 1회 2시간 | 30,0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% 가산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대관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 |
| 교육실 회의실 | | 20,000원 | |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이용료 및 감면 내용(제4조제3항, 제5조의2 관련)

| 구 분 | 기 준 | 이용료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평생교육 프로그램 | 1인/1과목 | 시중요금의 50% 이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,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평균을 말함. 2. 감면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5조의2제1호 대상: 100분의 100 · 제5조의2제2호~제9호 대상 : 100분의 50 <p>단,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.</p>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강당, 교육실,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외의 자에게도 <u>사용</u>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<u>사용</u>하려는 자로부터 <u>별표에 따른 사용료</u>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| <p>제4조(이용대상 및 <u>대관료</u>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관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대관하</u>거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<u>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관료와 이용료</u>-----.</p> |
| <p>제5조(사용료의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<u>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수급자 및 <u>차상위계층</u>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| <p>제5조(대관료의 감면) -----</p> <p>----- <u>대관료</u>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<삭 제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제5조의2(이용료의 감면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</p> <p>2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2조제 10호에 따른 <u>차상위계층</u></p> <p>3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32조제1항에</p> |

다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(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상자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
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9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| | |
|--|--|
| | <p>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함께 출입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|
|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| <p>④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 ·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를 준용한다.</p> | <p><삭 제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|--|--|----|----|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|--|
| <p>⑤ (생략)</p> |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2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」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| <p>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의2제3항-----</p> <p>2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」 제11조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| <p>제13조(시행규칙) <삭 제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5 1469 782 2029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평일 사용료 (이용료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강당</td> <td rowspan="2">주간 1회 2시간</td> <td>30,000원</td> <td>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 금의 20% 가산</td> </tr> <tr> <td>교육실 회의실</td> <td>20,000원</td> <td>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기준 | 평일 사용료 (이용료) | 비고 | 강당 | 주간 1회 2시간 | 30,000원 | 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 금의 20% 가산 | 교육실 회의실 | 20,000원 |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 | 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관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3 1469 1420 2029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평일 대관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강당</td> <td rowspan="2">주간 1회 2시간</td> <td>30,000원</td> <td>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% 가산</td> </tr> <tr> <td>교육실 회의실</td> <td>20,000원</td> <td>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대관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기준 | 평일 대관료 | 비고 | 강당 | 주간 1회 2시간 | 30,000원 | 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% 가산 | 교육실 회의실 | 20,000원 |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대관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 |
| 구분 | 기준 | 평일 사용료 (이용료)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당 | 주간 1회 2시간 | 30,000원 | 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 금의 20% 가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교육실 회의실 | | 20,000원 |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사용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기준 | 평일 대관료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강당 | 주간 1회 2시간 | 30,000원 | 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% 가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교육실 회의실 | | 20,000원 |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대관료의 20% 가산 ·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 가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<신 설>

[별표 2]

| 구분 | 기 준 | 이용료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평생교육프로그램 | 1인/1과목 | 시중요금의 50% 이하 | 1.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,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 평균을 말함. 2. 감면내용 · 제5조의2제1호 대상: 100분의 100 · 제5조의2제2호~제9호 대상 : 100분의 50 단,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. |

관계 법령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21.>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
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
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8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유공자”는 “특수임무유공자”로 본다.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억류지출신 포로가족”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. “등록포로”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복지향상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전 필요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의2(이용료의 감면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24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등록 국가유공자 회원 중 평생교육 신청자 130명* 산출
* '24.7월 기준 평생교육지원사업 등록인원 중 국가유공자 수
- 2024년 충청북도노인복지관 주이용대상인 거주지가 청주인 6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예상인원 207명* 산출
* 2024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인원 1,700명, 청주시 주민수 대비 60세이상 등록장애인 비율 12.2% 적용
- 평생교육지원사업 이용료 : 과목당 평균 80,000원 / 연간 2과목 감면

나. 추계 결과

- 연간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액(337명×80천원×50%×2과목) : 26,96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5년) | 2차년도 (2026년) | 3차년도 (2027년) | 4차년도 (2028년) | 5차년도 (2029년) | 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 출 | 26,960 | 28,847 | 30,866 | 33,027 | 35,339 | 155,039 |
| 국가유공자 감면 | 10,400 | 11,128 | 11,907 | 12,741 | 13,633 | 59,809 |
| 장애인 감면 | 16,560 | 17,719 | 18,959 | 20,286 | 21,706 | 95,230 |

* 연간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수 증가율(7%) 적용